

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七月 2 일

여수시장 2024. 7. 2.



여수시 조례 제2111호

붙임 여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## 여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”을 “조례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”으로, “시민”을 “여수시민”으로 한다.

제2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자살시도자등”이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
4. “자살유발정보”란 법 제2조의2제3호의 정보를 말한다.
5. “생명지킴이”란 법 제2조의2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적극적 개입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,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생명존중 및 자살예방”을 “생명존중 및 자살예방”으로

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년도”를 “연도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”을 “자살시도자등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4호 중 “자살예방 전문 인력”을 “생명지킴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살예방센터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”를 “자살예방센터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자살유해정보”를 “자살유발정보”로, “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”를 “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”을 “자살시도자등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<b>제1조(목적)</b> -- 조례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----- 여수시민----- -----.
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<b>제2조(정의)</b>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〈신 설〉	3. “자살시도자등” 이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
〈신 설〉	4. “자살유발정보”란 법 제2조의2제3호의 정보를 말한다.
〈신 설〉	5. “생명지킴이”란 법 제2조의2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.
<b>제3조(시장의 책무)</b>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·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.	<b>제3조(시장의 책무)</b> 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적극적 개입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  ②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,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〈신 설〉	

<p><b>제5조(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 계획 수립)</b> ① 시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 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5조(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 계획 수립)</b> ① -----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  ③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  ③ ----- ----- ----- 연도 ----- -----.</p>
<p><b>제6조(자살예방체계 구축)</b> ① (생략)</p>	<p><b>제6조(자살예방체계 구축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시장은 관내 의료기관,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,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자살시도자등 -----.</p>
<p><b>제8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</b>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</p>	<p><b>제8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</b> ①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3. (생략)  4.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 4. 생명지킴이 ---</p>
<p>5. (생략) 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내에 둘 수 있다.</p>	<p>5. (현행과 같음)  ② ----- 자살예방센터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정신 건강복지센터 -----.</p>

<b>제9조(생명존중문화 조성) ① (생략)</b>	<b>제9조(생명존중문화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</b>
<p>②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③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</p>	<p>③ ----- ----- 자살유발정보----- ----- ----- 자살유 발정보체계----- -----.</p>
<b>제10조(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) ① (생략)</b>	<b>제10조(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b>
<p>②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, 상담치료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</p>	<p>② ----- 자살시도자등 ----- ----- ----- -----.</p>